

녹 의: 제17 - 039호
수 신: 병(의)원장
참 조: 진단검사의학과, 보험심사과
제 목: 유전자검사 의뢰 시 유전자검사동의서 첨부 안내

2017년 02월 10일

1.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본원에서 시행 또는 위탁하는 유전자검사항목의 유전자검사동의서 첨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3. 이에 대한 귀원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.

- 아 래 -



1. 유전자검사 의뢰 시 유전자검사동의서 첨부 안내

- 1)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유전자 검사기관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할 때에는 검사대상자(또는 법정 대리인)로부터 소정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※ 유전자검사기관의 유전자검사동의서(질병관리본부)에 대한 안내사항
<관련 법령>

- 유전자검사기관이 유전자검사에 쓰일 검사대상물을 직접 채취하거나 유전자검사기관 외의 자가 검사대상물을 채취하여 유전자검사기관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하는 때에는 검사대상자(또는 법정대리인)로부터 소정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. (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제51조 제1항 및 제3항)
- 이를 위반한 유전자검사기관은 **업무정지 1개월**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. (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제68조 제11호 참조)

- 2) 질병관리본부 안내사항에 따라 유전자검사 의뢰 시 **유전자검사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은 검사**에 대해서는 **처벌의 대상**이 되므로 검사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.
- 3) 본원에서 시행하는 유전자검사뿐만 아니라 **대학병원 등으로 위탁하는 유전자검사도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서가 있어야만 검사가 가능합니다.**
- 4) 따라서, **유전자검사동의서를 필요로 하는 항목 의뢰 시 유전자검사동의서를 반드시 첨부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

